

# 프랑스의 공동체주택 진흥 방안

정희원

프랑스 건축사, 도시계획가

최근 국내에서는 주거 공간의 퀄리티와 경제적 접근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주택 수요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르는 공동체주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간 주도의 코하우징과 세어하우스 등의 형태로 시작되어 이웃 간의 연대 강화와 주거비 절감, 동네 활성화 등 공동체주택의 다양한 효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해 각 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집과 동네로 이어지는 광의의 주거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공동체주택은 특히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방안으로 부각되면서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유럽 국가들 중 공동체주택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에 속하던 프랑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의 이웃 국가에서 이미 공동체주택이 거주민 협동조합과 연계된 주택 보급 문화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 프랑스의 공동체주택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까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이는 개발업자 주체의 민간주택과 국가 주체의 공공임대주택이 주택 공급의 양대 축으로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는 태에 연유하기도 하지만, 협동조합형의 공동 소유 개념에 익숙하지 않고 자가주택 보유를 중요시하는 문화적 풍토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런 문화적 특성은 우리나라와도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10여 년간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졌고, 특히 2014년 공포된 도시주거재생법(*Accès au Logement et un Urbanisme Rénové: ALUR*)<sup>\*</sup>을 통해 공동체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프랑

\* 월세를 비롯한 주택시장의 각종 비용 합리화, 도시건축법 현실화, 주거 환경의 안정성 증진, 주거 혁신(공동체주택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 전반의 혁신을 위한 법률

스의 공동체주택은 바야흐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이에 프랑스 공동체주택의 역사와 개념을 짚어 보고, 2010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주택 진흥 방안들을 살펴보면서 국내 공동체주택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프랑스 공동체주택의 역사와 개념

프랑스에서 공동체주택(habitat participatif)의 역사적 기원은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복지시설을 공유하던 19세기 말의 ‘조합주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주택부족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카스토르 자가 건설 운동(Castor autoconstruction)\*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공동체 커뮤니티와 민주적 의사결정 중시, 친환경적 삶의 방식 추구 등 현재에도 이어지는 공동체주택의 이념적·문화적 기반은 197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이어진 자가운영 공동주택 운동(Mouvement de l’Habitat Groupé Autogéré: MHGA)\*\*에 기원하는 바가 크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는 개인주의와 단독주택으로 대표되는 시기로, MHGA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공동체주택 운동이 침체기를 맞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주택 부족 현상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민간 주도의 공동체주택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참여주택(habitat participatif)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프랑스의 공동체주택은 자가 건설(auto-construction), 자가 프로모션(auto-promotion), 공동주거(habitat groupé)\*\*\* 등 주거 공간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쓰이다가, 점차 개발업자와 국가에 의한 전형적인 주택생산방식과 차별화되는 대안을 찾는 모든 운동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었다. 지난 2014년 3월 26일에 공포된 도시주거재

생법인 ALUR법은 공동체주택을 “개인이나 법인\*\*  
\*\*이 자신들이 거주할 집과 공동으로 사용할 공간을 계획하고, 주택의 신축이나 취득 및 운영과 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적 절차\*\*\*\*”로 정의하고 있다.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직접 계획과 관리에 참여하는 것에 방점을 둔 점이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이다.

이웃 간의 연대 강화, 주거비 현실화와 더불어 사회적(연령, 교육, 소득수준) 다양성 추구, 환경친화적 건축과 관리 방식 지향, 투기를 지양하는 주거문화 양성, 민주적 시민의식 성장 등은 프랑스의 공동체주택이 오늘날 지향하는 가치들이다.

\* 국가적인 차원의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 자가주택 수요에 대한 노동력을 공급하여 1949년에서 1955년 사이에 1만 2,000호가 넘는 주택이 지어짐

\*\* 공동체의 삶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회복을 주거환경의 중심 가치로 놓고, 민간 주도와 뒤를 이은 정부의 실험적 프로젝트 등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공동주거가 실현됨. 이 시기에 실현된 공동주거의 거주민 일부와 운동가들은 현재까지도 친환경 공동 주거(Eco Habitat Groupé) 연합으로 MHGA의 맥을 잇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의 공동체주택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자가 건설(auto construction): 주택의 전체 혹은 일부(주로 마감재)를 거주민이 직접 시공하여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는 방식  
자가 프로모션(auto promotion): 입주 가구들이 직접 주택의 건축·분양·매도를 관리하는 방식을 지칭하며, 거주민 생활 공동체의 형성이 반드시 가정되지는 않음

\*\*\*\* 공동주거(habitat groupé): 공동체의 삶을 전제하는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1970~1980년대 자가 운영 공동주거 운동으로 생겨난 주택 형식을 지칭한다는 점에서는 현재 프랑스의 공동체 주거 개념에 가장 가까운 용어임

\*\*\*\*\* 거주민 협동조합에 법인의 조합원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 기관이 공동체주택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림

Art. L. 200-1. – «L’habitat participatif est une démarche citoyenne qui permet à des personnes physiques de s’associer, le cas échéant avec des personnes morales, afin de participer à la définition et à la conception de leurs logements et des espaces destinés à un usage commun, de construire ou d’acquérir un ou plusieurs immeubles destinés à leur habitation et, le cas échéant, d’assurer la gestion ultérieure des immeubles construits ou acquis.»

## 프랑스의 공동체주택 진흥 방안

2016년 1월 기준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공동체주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40여 개의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현재 공동체주택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개별적 민간 그룹의 주도로 진행된 공동체주택의 성공률은 10%를 넘지 못하고, 성공적으로 완공되는 프로젝트들의 경우도 평균 4년에 이르는 마라톤 여정을 거쳐야 하였다. 개별 가정들이 공동의 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거주민 그룹을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적합한 땅을 찾고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 분쟁 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공동소유 개념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선택하는 문제 등 만만치 않은 관문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체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의 의사가 반영된 맞춤형 집이라는 면에서 일반적인 집합주택과 차이가 있고, 건축주 역시 직업적 건축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리스크가 높은 케이스로 간주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동체주택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프로젝트

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문화적 역량이 높은 사람들에 제한된 것으로 인식되어 온 면이 크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공동체주택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3의 주택 공급 형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 공동체주택 관련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2010년 11월 스트拉斯부르에서 제1회 공동체주택 전국대회(Rencontres Nationales de l'Habitat Participatif)가 열리면서 관련 주체들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구조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먼저 공동체주택 전국지자체연합(Réseau National des Collectivités en matière de l'Habitat Participatif: RNCHP)이 결성되었다. 각 지역에 뿐만 아니라 있던 공동체주택 관련 민간 단체들은 그간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공동체주택 백서\*\*를 발간하고, 코디악시옹(Coordin' action)이라는 이름의 단체로 연합하였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직업인들



프랑스의 공동체주택 단체(좌)와 프로젝트(우) 분포 지도

자료: <http://www.habitatparticipatif.eu>



은 공동체주택 전문가 네트워크(Réseau des Acteurs professionnels de l'Habitat Participatif: RAHP)를 결성하였다. 공동체주택 전국대회는 격년으로 열리며, 매년 전국 공동으로 오픈하우스를 개최하여 공동체주택 관련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다.

### 지자체들의 시범사업 발주

RNCHP에 소속된 지자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공동체주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사업 형태는 다양하지만 도심지의 경우 대체적으로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일단 시유지를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의 형식을 취한다) 안정적인 거주민 그룹 형성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 또한 거주민 그룹과 공공임대주택 운영 기관의 결합을 주선함으로써 소득수준 등 프로필이 다양한 가구들이 하나의 공동체주택을 이룰 수 있는 법적·재정적 테두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의 네트워킹 플랫폼을 조성한다.

### ALUR법 정비

2010년 전국대회 이후 이어진 민간 주체들과 정부 간 교류의 결실이기도 한 ALUR법은 지난 10여 년간 민간의 주도로 꾸준히 맥을 이어온 공동체주택을 대안적 주택 공급 형태로 인정·장려하고 공식적으로 법제화하였다는 데 일차적인 의미를 지닌다.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세부 시행령이 보완되어야 하지만, 우선 두 가지 형태의 공동체주택 법인 운용을 제도화하였다. 거주자 협동조합(Coopératif d'habitants)과 자가개발·분양회사(Société immobilière d'attribution et d'autopromotion)가 그것이다.<sup>\*\*\*</sup> 법제화를 통해 은행이나 법률자문가·건축가 등 프로젝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공공정책의 제안과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자 협동조합의 임대 운영 방식이나 조합원의 지분 거래와 탈퇴에 대한 일반시행령이 2015년 12월 발표되었고, 준공 보증(garantie d'achèvement)과 조합원의 노동참여를 자본참여 분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한 시행령은 현재 진행 중이다.

###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육성·보급

공동체주택 프로젝트는 그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성격만큼이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프로세스이다. 이 때문에 그 접근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프로젝트의 진행을 동반하면서 거주민 그룹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Assistance à la Maîtrise d'Ouvrage: AMO, Assistance à la Maîtrise d'Usage: AMU)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거주민들 간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공동체의 규약(Charte de vie)을 이끌어 내고, 건축물의 규모와 성격을 현실화하며, 법률적·재정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코디네이터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분야는 다양하다. 1970년대의 공동체주택에서 자원봉사자나 운동가의 형태로 그 전신이 존재하였다면, 오늘날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는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동체주택의 효용에

\* VIALATTE, Hubert, 2016.

\*\* 공동체주택이 지향하는 가치, 공동체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제언과 앞으로의 전망, 공동체주택 역사, 법적 형태, 유형 등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골자로 함

\*\*\* 거주자 협동조합(Coopératif d'habitants): 주택은 조합원의 공동 소유이며, 가구별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음. 조합원은 주주인 동시에 세입자의 자격을 가지며 웅자상환금과 관리비를 임차료의 형식으로 납부. 투기지양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지분 크기에 관계없이 1인 1표제)을 특징으로 하며, 공동체의 개념이 강한 법적 형태임  
자가개발·분양 회사(Société immobilière d'attribution et d'autopromotion): 거주자들이 직접 주택의 분양·매도권을 가지는 형태. 분양이 완료된 후에는 일반적인 소유주 연합(copropriété)으로 변경될 수 있음. 거주자 협동조합에 비해 개인 소유의 개념이 강한 법적 형태임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수요가 증가하며, 2010년 전국대회 이후 관련 단체들 간에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전문 코디네이터를 육성할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 파리의 공동체주택 공모전

파리 시는 지난 2014년 중반부터 2016년 초까지 시유지 세 곳을 대상으로 공동체주택 공모전을 열고, 현재 당선 팀들과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 진행 절차와 당선작을 통해 프랑스의 공동체주택 지원 정책의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공모전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5개월여간 진행된 첫 번째 단계를 통해 부지별 거주민 그룹이 형성되었다. 2014년 5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그룹이나 개별 가구들을 접수하여 6월부터 10월 까지 6차례의 아틀리에를 진행하고, 공동체주택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재정적 질문에 답하는 상설창구도 개설하였다. 점차 부지별로 팀을 조직하고, 공동생활의 지향점과 조직 방식, 건축 프로그램의 구성과 재정적 구성을 대한 윤곽을 잡을 것이 요구되었다. 특히 그룹 구성에 있어서 연령과 교육, 소득수준의 다양성, 공공임대주택의 포함 여부, 투기 방지 조항 유무 등이 심사의 주안점으로 반영되어 총 30개 지원팀 중 12팀(부지당 4팀)이 선정되었다.

10개월여간 진행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동체의 규약을 확립하고, 코디네이터·건축가 등의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재정적·법률적·건축적으로 발전된 공동체주택 프로젝트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파리 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동체주택 분야의 코디네이터와 건축가 인력풀을 확보하고, 각 거주자 그룹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하였다. 제안의 혁신성(이웃과의 생활접점에 있어서, 주거 자체에 있어서), 도시적 건축적인 완성도, 친환경성, 재정 형태의 균형과 복제 가능성, 투기성 지양 등이 심사의 주안점이 되어 부지마다 한 팀씩 선정되었다.



파리 시 공동체주택  
공모전 전시 풍경

자료: Pavillon de l'Arsenal



당선팀 Alfamaa 그룹  
구성원

자료: Alfamaa



코디네이터와 함께  
진행되는 당선팀  
UTOP의 주민 기획  
회의 광경  
(atelier de maîtrise  
d'usage)  
자료: ArchiEthic - Utop -  
Coopim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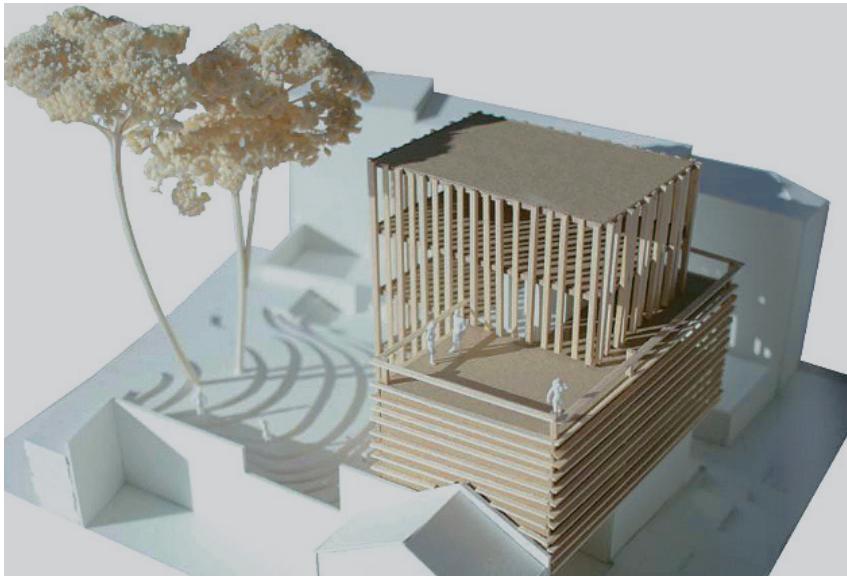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당선 팀들이 기본설계를 발전시키고, 발전된 설계 안을 바탕으로 하여 건물의 환경·에너지 효율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며, 이에 기반하여 완공 후 에너지 소모와 관리 비용을 산출할 것이 요구되었다. 건축비에 관리와 운용비를 더한 건물의 생애 비용을 추정하기 위함이다.\* 최종 단계를 마친 팀들은 파리 시와 2개월 이내에 토지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파리 시는 2등안과 계약할 권리를 가진다. 당선 팀을 제외하고 2차까지 참여한 모든 팀에는 코디네이터와 건축가에게 지급된 실비의 90%가 팀당 1만7,000유로 한도에서 지급되었다.

- \* 초기에는 두 번째 단계에서 부지당 두 팀을 선정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당선 안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진행 도중 이 계획이 변경됨
- \*\* ALUR법의 시행령이 보완되는 대로 Alfamaa는 거주자 협동조합(Coopératif d'habitants), Dedans/Dehors는 자가개발·분양회사(Société immobilière d'attribution et d'autopromotion)로 법적 연합 형태를 변경할 예정임
- \*\*\* PLAI(Prêt Locatif Aidé d'Insertion), PLUS(Prêt Locatif à Usage Social), PLS(Prêt Locatif Social), PLI(Prêt Locatif Intermédiaire): 다양한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유형으로 PLAI에서 PLI까지 순차적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함  
PSLA(Prêt Social Location-Accession):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공공의 도움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하는 형태  
AL(Accession Libre):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일반적인 주택 취득

### 파리 시 공동체주택 공모전 당선 프로젝트

그룹명	거주자 연합 형태**	가구 수	주택 소유·임대 형태***	대지 소유 형태	공공주택 기관 파트너	기타 공공주택 법인
Alfamaa	SAS (Société par Action Simplifiée)	11(9+2)	1 PLAI, 4 PLUS 2 PLS, 1 PLI, 1 AL	Coopimmo 가토지 매입, 거주자 조합이 60년 상환	Coopimmo	Toit et Joie (2가구)
UTOP	거주민 협동조합 (ALUR법 제정 이후 최초)	17 (14+3)	14 PLS 3 PLUS	Coopimmo 가토지 매입, 거주민 조합에 임대	Coopimmo	Logeo Habitat (2가구) Toi et Moi (사회복귀주거 1가구)
Dedans /Dehors	SCIA (Société Civile Immobilière d'Attribution)	5(4+1)	1 PLAI 2 PSLA 2 AL	지분에 따른 세대별 소유	Habitat Solidaire	-
그룹명	대지 면적	최종 건축 면적	주민 공용 공간 (외부인 비개방)	외부인 개방 커뮤니티 시설	기타	
Alfamaa	228m <sup>2</sup>	874m <sup>2</sup>	주민 살롱, 놀이방, 게스트룸, 도서관, 사무실, 세탁실, 옥상정원	아틀리에- 코워킹(회원제), 소셜 클럽	모듈화된 평면 구성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공간 운용에 유연성을 도모함	
UTOP	396m <sup>2</sup>	1,002m <sup>2</sup>	주민 살롱, 게스트룸, 세탁실	음악 스튜디오, 코워킹 등 업무공간	주거민 조합 구성에서 연대적 성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남	
Dedans /Dehors	289m <sup>2</sup> (보호녹지구역170m <sup>2</sup> )	310m <sup>2</sup>	옥상테라스	다목적실, 녹지공간	대지 내 보호녹지구역을 이웃에 개방함	



당선작 Dedans/Dehors의

건축 모형 사진

자료: Atelier d'Architecture

Ramdam - Dedans/Dehors

## 시사점

첫째, 프랑스의 공동체주택은 ‘참여주택(habitat participatif)’이라는 용어로 통용될 만큼 구성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주택의 계획과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인의식과 공동체적 삶의 밀그림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뒤에 깔려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동체주택 사업에서는 공공에 의해 판이 먼저 마련되기 때문에 자칫 주민의 참여 폭이 축소되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민의 참여는 공공의 지원과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며 건강한 공동체의 삶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공동체주택은 공공 주도의 사업에서도 아직까지 비슷한 직업이나 소득, 연령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동체의 형성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인 듯하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형식이지만 장기적으로 공동체주택 문화의 확산과

성숙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유사성보다는 대화와 참여의 기반을 통해 형성되며, 서로 크기가 다른 돌들이 더 빙 틈 없이 항아리를 메우듯이 구성원의 다양성이 더 크고 의미 있는 생활공동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주택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공동주거 형태이다. 지가의 압박이 낮은 지방도시나 비도시권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여 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주택을 실험 할 수도 있다. 유럽에서 공동체주택 문화의 활성화는 그 나라의 지방분권제 확립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동체주택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스트라스부르·뮐·보르도·리옹 등 다수의 지자체가 파리 시에 앞서 공동체주택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공동체주택 전문 단체들은 그들이 속한 각 지역을 기반으로 주거문화의 혁신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공동체주택은 노후한 주택가 조직의 재생에 적절한 건축 규모와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도시 재생 방안으로, 지자체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들을 이끌고 관련 지식과 인력의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데 있어 공동체주택 분야의 선두 주자로 나선 서울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프랑스 공동체주택 백서(<http://www.habitatparticipatif.eu/wp-content/uploads/2015/04/LivreBlanc-HabitatParticipatif.pdf>), 2011.
- 파리 시 공동체주택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http://www.habitatparticipatif-paris.fr/>)
- 프랑스 공동체주택 관련 민간단체 연합 코딩악시옹 홈페이지 (<http://www.habitatparticipatif.eu>)
- 도시주거재생법(ALUR법) 전문(<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8772256&dateTexte=20160902>)
- 도시주거재생법(ALUR법) 보도자료([http://www.loi-alur.fr/wp-content/uploads/2013/06/130626\\_DP\\_projet\\_loi\\_Alur.pdf](http://www.loi-alur.fr/wp-content/uploads/2013/06/130626_DP_projet_loi_Alur.pdf))
- 프랑스 공동체주택 전국 지자체 연합 RNCHP, 공동체 주택 프로젝트 전국 조사 보고서 Synthèse de l'enquête nationale des projets d'habitat participatif([http://www.est-ensemble.fr/sites/default/files/synthese\\_loi\\_alur.pdf](http://www.est-ensemble.fr/sites/default/files/synthese_loi_alur.pdf)), 2012.
- TRIDEAU, Anaïs, L'habitat groupé participatif ou comment vivre ensemble, chacun chez soi, une démarche difficile à concrétiser?([http://base.socioeco.org/docs/fichierdocument\\_mc3a9moire\\_anac3afs\\_trideau\\_-\\_version\\_en\\_ligne.pdf](http://base.socioeco.org/docs/fichierdocument_mc3a9moire_anac3afs_trideau_-_version_en_ligne.pdf)) 석사논문 Master 2 AUDIT – Université Rennes 2 – IAUR, 2014
- GUISTAIN, Margot, Dossier Habitat Participatif, AMC, 2015.2, p.43~51.
- PARASOTE, GAUZIN-MULLER, L'habitat participatif en France: actualité et perspectives, EK, n° 42, 2015, pp.51~53.
- GAUZIN-MULLER, Dossier Habitat Participatif, EK, n° 42, 2015, pp.64~97.
- VIALATTE, Hubert, "L'habitat participatif monte en puissance" (<http://www.lesechos.fr/07/01/2016/LesEchos/22102-102-ECH-l-habitat-participatif-monte-en-puissance.htm?texte=vialatte>), 2016.
- LIENHARDT, Christian, "300 logements projetés à Strasbourg d'ici à 2020" ([http://www.lesechos.fr/07/01/2016/LesEchos/22102-104-ECH\\_300-logements-projetees-a-strasbourg-d-ici-a-2020.htm](http://www.lesechos.fr/07/01/2016/LesEchos/22102-104-ECH_300-logements-projetees-a-strasbourg-d-ici-a-2020.htm)), 2016.
- 파리 공동체주택 공모전 당선작, Alfamaa(<http://www.slideshare.net/Marioniks/alfamaa-le-lieu-de-vie-cooperatif-et-durable-60514384>)
- 파리 공동체주택 공모전 당선작 UTOP 건축가 Archi Ethic 의 Thomas HUGUEN 인터뷰 내용(tous mes remerciements), 2016.8.24.
- 파리 공동체주택 공모전 당선작 Dedans/Dehors 거주민 연합 대표 Marie CHÉRON 인터뷰 내용(tous mes remerciements), 2016.10.11.
- 프랑스 공공주택 유형별 가게 소득 상한표(2015년도 기준) (<http://www.actionlogement.fr/espace-professionnel/espace-juridique/plafonds-de-ressources-de-loyers-et-de-prix-de-vente/plafonds-de-ressources>)
- 프랑스 공공주택 유형별 월세 상한표(2015년도 기준)(<http://www.actionlogement.fr/espace-professionnel/espace-juridique/plafonds-de-ressources-de-loyers-et-de-prix-de-vente/plafonds-de-loyers>)
- 남원석·박은철, “1인가구시대 맞춤형 주거해법” 사회임대형 공동체주택 활성화”(<https://www.si.re.kr/node/51520>), 2014.
- 남원석, 「서울시 공동체주택 정책의 현황과 과제」, 『건축』, 60(6), 대한건축학회, 2016.6.